

#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회사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서 밝힌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란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행하는 책임투자, 의결권 행사 및 관여활동 등을 의미한다.

## 제3조(기본원칙)

- ① 회사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 ②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 ③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비공개 대화 등의 관여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과의 상호 이해 및 건설적 공감대의 형성
  2.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이해 폭 확대
  3. 투자대상의 가치와 회사의 수익자 및 고객 이익 사이의 부합
- ④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에 관한 지침」,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 ① 회사의 투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다.
  1.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2.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무성과와 연관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는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의결권행사의 경우 「의결권행사지침」을 따른다.
- ③ 회사는 투자대상의 위험 관리와 중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추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여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행조직)

- ①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된 투자 대상 운용담당 부서 및 리서치담당 부서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책임투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한다.
  1. 위원회는 대표이사, 유가증권부부장, 주식운용담당부부장, 채권운용담당부부장, 리스크관리부부장,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관부서의 책임자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며, 주요 활동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구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 (관여활동의 수행절차)

- ① 주식 및 채권의 운용담당 부서 및 리서치담당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투자대상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이행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관여활동을 수행할 회사를 선정하고 관여활동을 수행한다. (투자대상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중 ‘원칙 3’을 준용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중요 사안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입장 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이사회·경영진 등에 대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③ 사전 검토 및 관여활동을 통해 당초 의도한 수익자 및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실무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공개적인 관여활동, 투자의사 결정 변경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다.
- ④ 투자대상에 대한 관여활동은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기반을 둔 경영환경과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여활동의 우선순위는 변동될 수 있다.

#### 제7조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공개)

-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회사의 웹페이지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그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1.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2. 의결권 행사지침 및 내용
  3. 책임투자 및 관여활동 내용 관련 통계 등

#### 제8조 (수탁자 책임 활동에 따른 내부통제)

- ①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투자자 상호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의 적법성·투명성 등을 위하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대상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및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향후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여활동 시 책임이행 수준을 정한다.
  1.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평가하고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 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의 고객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는 상당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 및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③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투자대상에 대한 관여활동 시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④ 제3항의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규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지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 규정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처리)

- ① 회사는 투자대상의 관여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여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미공개 중요정보의 처리절차는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제74조, 제78조 등)과 사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따른다.
- ② 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적 관여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투자대상 측에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사가 없음을 문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선언한 뒤 관여활동을 수행한다.

부칙 (2018년 07월 25일)

이 지침은 2018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02월 05일)

이 지침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